

		<h1>보 도 자 료</h1>			
		<b>배포일시</b>	<b>2019. 1. 23.(수)</b> <b>총 8매(본문5)</b>		
<b>담당 부서</b>	공공주택 지원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김영혜, 사무관 박선동·곽인영, 주무관 전성이 • ☎ (044) 201-4531, 4479, 4528		
<b>보 도 일 시</b>		2019년 1월 2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3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## 청년·신혼부부 매입·전세임대주택 7,904호...29일부터 공고 19세~39세 청년(예비)신혼부부6세 이하 한부모 가족 신청 가능...4월부터 입주

< 제도개선으로 매입·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 사례 >

- \* (청년) 고시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난 30세 취업준비생으로,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되면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.
- \* (한부모 가족)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, 신혼부부 매입·전세임대주택에 신혼부부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.
- \* (신혼부부)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C씨는 서울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서울지역의 신혼부부 매입·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(시·군·구)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,204호,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,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.

유 형		공급호수	비 고
계		7,904	
청년임대	매입형	275	다가구주택 등
	공공리모델링형	235	다가구주택 등
신혼부부 매입임대 I		1,427	다가구주택 등
매입임대리츠		267	아파트 등
신혼부부 전세임대 I		5,700	다가구주택 등

○ 이번 입주자 모집은 「신혼부부·청년 주거지원방안(관계부처 합동, '18.7.5)」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

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\*을 반영하여, 앞선 사례와 같이 그동안 매입·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.

\* (청년)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→19세~39세 청년까지 확대,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

(신혼부부)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,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(소득 70% 이하→90% 이하),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

## 청년 매입임대주택

□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·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의 청년(19세~39세)에게 시세의 30% 수준(3·4순위의 경우 50% 수준)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,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된다.

○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순위	지역요건	입주요건	
1순위	타지역 출신	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정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등	
2순위	타지역 출신	소득요건	월평균 소득 50% 이하(본인+부모) (장애인 가구 100% 이하)
		자산요건	총자산 196백만원 이하, 자동차 2,499만원 이하
3순위	타지역 출신	소득요건	월평균 소득 100% 이하(본인+부모) (장애인 가구 150% 이하)
		자산요건	본인기준 총자산 75백만원 이하, 자동차 무소유
4순위	-	소득요건	월평균 소득 80% 이하(본인) (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00% 이하)
		자산요건	총자산 232백만원 이하, 자동차 2,499만원 이하

\* 월평균 소득 : 3인 이하 가구 5,002,590원, 4인 가구 5,846,903원 등

\* 타지역 출신 :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(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소재지) 이외의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

○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,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,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(최장 20년 거주)이 가능하다.

##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

-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·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%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, 전국 50개 지역에서 1,427호가 공급된다.
-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(맞벌이의 경우 90%)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\*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(예비) 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.
  - \* 총자산 280백만원, 자동차 2,499만원 이하
-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,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,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,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.
-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,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.

## 매입임대리츠주택

-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㎡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·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~90%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,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된다.
-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(맞벌이의 경우 120%)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순위	입주요건		
1순위	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	소득요건	월평균 소득 100%(맞벌이 120%) 이하
2순위	청년		
3순위	1,2순위 미해당	자산요건	부동산 21,550만원 이하 자동차 2,850만원 이하

- **최초 임대기간은 2년**이며,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**임대료 상승 없이**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**최대 10년간**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.

##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

-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I 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, **전국 모든 지역\***을 대상으로 5,700호가 공급된다.

\* (공급지역) 인구 8만 이상 도시→모든 시·군·구로 확대

- 지원 **한도액**은 **지역별로 차등** 적용되며,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%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~2%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.

지역	지원한도액	임대보증금	월임대료
수도권	1억 2천만원	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%	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이율 적용 ○ 4천만원 이하 연1% ○ 4천만원~6천만원 연1.5% ○ 6천만원 초과 연2%
광역시	9천 5백만원		
기타 지역	8천 5백만원		

- 금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**수시모집** 제도를 도입하여 **2월 11일부터**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과 동일하다.

○ **최초 임대기간은 2년**이며,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**최대 20년간**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.

□ **매입임대주택** 입주 희망자는 **2월 18일부터**, **전세임대주택** 입주 희망자는 **2월 11일부터**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(<https://apply.lh.or.kr>)를 통해 **온라인으로** 신청하면 된다.

- \* (매입임대)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4월부터, 청년은 5월부터 입주 시작
- \* (전세임대) 신청 후 약 2개월 후부터 당첨자 안내 시작

○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·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, 대상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되었고,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”며,

○ “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·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,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·전세임대Ⅱ\*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- \* 신혼부부 매입·전세임대Ⅱ :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 100%(맞벌이의 경우 120%) 이하의 (예비)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시세 80%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(매입임대) 박선동 사무관, 전성이 주무관(☎ 044-201-4531, 4528), (전세임대) 곽인영 사무관 (☎ 044-201-447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

**참고 1****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행정구역별 공급호수**

○ 청년 매입임대주택 (29개 시·군·구, 510호)

행정구역	공급호수	행정구역	공급호수
강원도	56	부산광역시	12
경기도	142	서울특별시	100
경상남도	1	인천광역시	6
경상북도	13	전라북도	1
광주광역시	159	충청북도	9
대전광역시	11		

\* 매입형, 리모델링형 합산

○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(50개 시·군·구, 1,427호)

행정구역	공급호수	행정구역	공급호수
강원도	65	부산광역시	79
경기도	470	서울특별시	543
경상남도	22	인천광역시	96
광주광역시	53	전라남도	16
대구광역시	8	전라북도	28
대전광역시	35	충청북도	12

○ 매입임대리츠주택 (38개 시·군·구, 267호)

행정구역	공급호수	행정구역	공급호수
강원도	14	울산광역시	6
경기도	38	인천광역시	6
경상남도	14	전라남도	1
경상북도	1	전라북도	5
대구광역시	15	충청남도	65
대전광역시	10	충청북도	14
부산광역시	78		

# '19년도 제 1차(1.29) 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물량



총 2,204호





대한민국 신혼부부 모두 모여라!

## |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| 입주자격 확대 및 수시모집

2019년 새로 바뀐 LH신혼부부전세임대  
이제 신혼부부·한부모가족 모두 함께해요!

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

여성신혼부부

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



**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?**  
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

<p><b>○ 공급 총 수</b> 전국 5,700호</p> <p><b>○ 신청 자격</b> 신혼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(세무처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% 이하)이고, 자산(7만불) 미만 24,400만원, 차등자 2543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, 여성신혼부부, 한부모가족</p> <p><b>신혼부부</b> : 신혼일 현재 혼인 7년 미만 사람  <b>여성신혼부부</b> : 신혼일 현재 혼인 해한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까지 혼인(과거는 사람 포함)이 없음  <b>한부모가족</b> : 전세 30%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모 또는 30% 한부모가족이었던, 재도 재혼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사람</p> <p><b>○ 신청 할 순 위</b> <b>1순위</b> 신혼일 현재 임신 중임신전단계 등으로 확인되거나 출산 3년 이내의 기본증명서상 출생 신고일 기준 임종당임신교실 기록하여 자녀등록을 포함 하며, 이혼경지에 해당자가 있는 경우  <b>2순위</b>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</p> <p><b>○ 지원한도액</b></p> <table border="0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e8f5e9; padding: 2px;">신혼부부</td> <td>최대 12,000만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e8f5e9; padding: 2px;">여성신혼부부</td> <td>최대 9,500만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e8f5e9; padding: 2px;">한부모가족</td> <td>최대 8,500만원</td> </tr> </table>	신혼부부	최대 12,000만원	여성신혼부부	최대 9,500만원	한부모가족	최대 8,500만원	<p><b>○ 신청 할 기간</b> 2019. 02. 1(월) ~ 12. 31(화)까지 수시 신청가능</p> <p><b>○ 신청 할 방법</b> 주민등록증, 혼인관계증명서, 세대원보이용제권 및 제3자 제공동의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등을 소관 후 첨부하여 인터넷신청 * 기타 상세한 서식 및 신청방법은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</p> <p><b>○ 임대료 조건</b> 임대보증금   지원한도에 입주시 전세보증금의 50%              임대료   전세임대에서 임대보증금을 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~2% 이하</p> <p><b>○ 임대 기간</b> 최초 2년, 2년 단위로 총 9회 재계약 가능(최장 20년 거주)</p> <p>2019년 공급계획 내의 공급총수가 초과되면 수시모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입주신청 전 LH발령센터(<a href="http://apply.lh.or.kr">http://apply.lh.or.kr</a>)의 "입주자 모집공고문"을 통해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</p> <p><b>○ 문의 피 해</b> LH콜센터 1600-1004</p>
신혼부부	최대 12,000만원						
여성신혼부부	최대 9,500만원						
한부모가족	최대 8,500만원						



